

2023년 청정생산·생태산업개발 및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

청정생산, 생태산업단지,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(기업) 및 개인에 대한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「2023년 청정생산·생태산업개발 및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」의 신청·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09월 07일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
1. 포상개요

신청부문 : 총 3개 분야*, 6개 부문(단체(기업), 개인)

* ①청정생산, ②생태산업개발, ③순환경제(재자원화, 재제조 등)

포상규모 :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00점

신청자격

○ 청정생산 분야

- (개인) 3년 이상 청정생산*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, 제조업의 청정생산 전환을 위한 사업화 추진,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또는 청정공정 및 친환경제품 분야에서 단체(기업)가 아래의 성과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자(단,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)

* 청정생산은 제조업이 제품생산 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(온실가스, 미세먼지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 등) 발생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

- (단체) 최근 10년 동안('2012년 1월~현재), 청정생산 기술을 공정 또는 제품에 적용하여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기업 또는 단체 (단,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)

<청정생산 분야 성과기준표>

유형	청정공정	친환경 제품												
<p>세부 설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청정공정기술 또는 설비를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품의 소재 및 구조 단일화/단순화, 제품 내구성 향상, 제품 수리 및 교체 및 재제조 등을 용이하게 제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의 사용-폐기 단계에서 오염을 예방에 기여하는 활동 												
<p>성과 기준</p>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(기업) 또는 기여한 자</p> <p>1) 청정생산 분야 투자 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간의 청정생산 전환을 위한 총투자 금액이 3년(2020~2022년) 평균 매출액의 1% 이상 * 예시) 10년간 청정생산 전환을 위한 총 투자금액 5억원, 3년 평균 매출액 200억원/년일 경우 2.5%로 충족 <p>2) 온실가스 감축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생산 적용을 통하여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총합이 아래의 기준 충족하는 경우 <p align="right">(단위 : 톤CO2-eq./년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7 1290 866 1373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align="center">300</td> <td align="center">1,000</td> <td align="center">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3) 폐기물 저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생산 적용을 통하여 10년간 폐기물 저감 총합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<p align="right">(단위 : 톤/년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7 1644 866 1727"> <thead> <tr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align="center">500</td> <td align="center">1,500</td> <td align="center">7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정생산 적용을 통하여 미세먼지 또는 화학물질 등 유해 오염물질 저감 등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300	1,000	5,000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500	1,500	7,500	<p>아래의 4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(기업) 또는 기여한 자</p> <p>1) 친환경제품 생산 분야 투자 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간의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총투자 금액이 3년(2020~2022년) 평균 매출액의 1% 이상 * 예시) 10년간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총 투자금액 10억원,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/년일 경우 2.0%로 충족 <p>2) 친환경제품 매출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% 이상 * 2개 이상의 친환경제품을 제조판매 하는 경우 모든 친환경제품의 매출액의 합으로 계산 <p>3) 국내 최초 상용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제품 상용화 달성 여부 <p>4) 기타 성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제품 상용화를 위하여 소재·부품 공급 업체들과의 협업 활동 등 수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
300	1,000	5,000												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
500	1,500	7,500												

○ 생태산업개발 분야

- (개인 및 단체) 최근 10년 동안('2014년 1월~현재), 생태산업개발*을 통해 온실가스 또는 폐기물 감축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
(단,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)

*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열, 폐기 부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활동

<생태산업개발 분야 성과기준표>

유형	온실가스 감축	폐기물 감축
세부 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활용되지 않는 열(공정배열, 소각 회수열 등), 공정 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 생산 및 공급 등 산업 기업간 또는 기업-지역사회 간 연계 재자원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 내 발생 부산물 중 산업 기업 간 또는 기업-지역 간 연계 재자원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화 또는 순환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저감 또는 매출액이 증대한 경우
성과 기준	<p>아래의 5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(기업) 또는 기여한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생태산업개발 분야 투자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간의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총투자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2) 온실가스 감축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만톤CO₂-eq./년 또는 사업장 발생량 대비 5% 이상 감축 * 온실가스 배출권 활용 누적 감축량 (할당+상쇄배출권)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경우만 해당 3) 경제적 성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10년간 창출한 경제적 성과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4) 고용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10년간 신규 고용한 인력이 30명 이상인 경우 5) 기타 성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 외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 	<p>아래의 5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(기업) 또는 기여한 자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생태산업개발 분야 투자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10년간의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총투자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경우 2) 폐기물 감축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10년간 폐기물 감축량이 1,000톤/년 또는 사업장 발생량 대비 5% 이상 감축 *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3) 경제적 성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10년간 창출한 경제적 성과 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4) 고용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태산업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10년간 신규 고용한 인력이 20명 이상인 경우 5) 기타 성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그 외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탁월한 성과 입증이 가능한 경우

○ 순환경제(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)분야

- (개인) 순환경제(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)분야의 사업화 추진 및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

* 단,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

- (단체) 순환경제(재자원화 및 재제조 등)분야의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,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 이상을 달성한 단체 또는 기업

* 단,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

<순환경제 분야 단체 성과기준표>

유형	재자원화	재제조
대상	• 재자원화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단체 또는 기업	• 재제조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단체 또는 기업
성과 기준	<p>아래의 5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(기업)</p> <p>1) 재자원화 분야 투자 및 금융지원 • <u>최근 5년간</u> 재자원화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가 <u>4억원 이상인 경우</u></p> <p>2) 재자원화 분야 매출액 • <u>최근 3년간</u> 재자원화 품목 평균 매출액이 전체 <u>매출액에 45% 이상인 경우</u></p> <p>3) 재자원화 분야 최초 상용화 • 재자원화 기술 상용화 및 기술 개발 달성 여부</p> <p>4) 우수 품질체계 구축 • 우수재활용제품인증, ISO 14001, ISO 9001, GRS 인증 취득 등 환경경영체계구축 여부</p> <p>5) 재자원화 관련 기타 성과 • 재자원화 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 입증 가능한 경우</p>	<p>아래의 5개 조건 중 2개 이상의 기준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(기업)</p> <p>1) 재제조 분야 투자 • <u>최근 3년간</u> 재제조 산업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가 <u>4억원 이상인 경우</u></p> <p>2) 재제조 분야 매출액 • <u>최근 3년간</u> 재제조 품목 평균 매출액이 전체 <u>매출액에 45% 이상인 경우</u></p> <p>3) 재제조 분야 최초 상용화 • 재제조 품목 상용화 및 기술 개발 달성 여부</p> <p>4) 우수 품질체계 구축 • 재제조 품질인증, ISO 14001, ISO 9001 등 환경경영체계구축 여부</p> <p>5) 재제조 관련 기타 성과 • 그 외 재제조 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 입증 가능한 경우</p>

2. 신청·접수

□ 신청 기간 : '23. 09. 07(목) ~ 9. 29(금), 18:00까지

□ 신청 방법 / 연락처 :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

○ 청정생산 보급확산: rachel3818@kncpc.re.kr / 02-2183-1533

○ 생태산업개발 분야: khhan@kncpc.re.kr / 02-2183-1530

○ 순환경제산업 분야 : kh1123@kncpc.re.kr / 02-2183-1524

□ 신청 서류

○ 분야별 공적조서 및 해당 증빙

○ 유공포상 추천서(신청 당사자(기관)를 추천하는 제3자(기관) 작성요망)

○ 개인(기업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첨부파일 참조)

□ 시상 일정 : 관련 행사에서 시상(추후 제공지)

○ 일 시 : 2023년 11월 中

○ 장 소 : 미정

※ 행사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변동 예정

※ 수상자는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

3. 결격사유

※ 자격기준, 심사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 지침에 따름

□ 국민표창(개인의 경우)

○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등기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○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□ 단체표창(기업의 경우)

○ 표창 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
○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○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

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표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○ 기타 사회적 물의